

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[별표 2]

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기준
(제2조제1항제2호관련)

1. 각 관측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상측기를 각각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일부의 기상요소만을 관측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측시설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상측기만을 설치할 수 있다.
 - 가. 온도계
 - 나. 기압계
 - 다. 풍향계
 - 라. 풍속계
 - 마. 강수량계
 - 바. 강수유무계
2. 제1호 각 목의 기상측기를 제외한 기상측기는 각 관측시설의 관측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